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1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양순임,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1. 제안이유

2023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공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함(안 제9조)
- 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부실공사의 신고 건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규정을 명시함(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감사담당관

라.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를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사의 부실 추정) ① 발주부서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추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추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

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 ③ (생략)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생략) <u><신설></u>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② (생략)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부서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
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
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